

[별표 2]

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의 거짓·부실 작성에 관한 판단기준(제10조 관련)

1.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(이하 이 표에서 "기초자료"라 한다)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가. 현황자료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1) 지반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지반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에 제시한 경우
 - 2)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
 - 나. 시추 조사, 지하수 조사(흐름방향, 유출량 등), 지표레이더 탐사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지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
 - 다.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
2. 지하영향평가서등 및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검토 또는 협의 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적절한 검토 또는 협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가. 법 제19제1항에 따른 사전공사를 하였음에도 관련 내용을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기본현황자료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
 - 나. 영 제14조·제21조·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 평가·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누락한 경우
 - 다.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영 제2조 각 호의 지하시설물 현황을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작성 시 누락한 경우